

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6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1. 14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11. 1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11. 26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과장 최정란)

가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과 군민의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3조)
- 2)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3)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4)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5)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6) 환경우수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7)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
- 2)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편성예정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없음[복지지원과-22169(2024. 4. 24.)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 564호

- 예고기간: 2024. 3. 25. ~ 2024. 4. 15.(21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공공기관과 군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3조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 ~ 제5조)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,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, 군수는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·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 ~ 제9조) 1회용품 사용 제한, 교육·홍보, 환경우수업소 지정,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

-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을 위해 본 제정조례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민 홍보 및 실천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